

편집위원회 세칙

제정	2000. 9. 29.
개정	2001. 6. 22.
개정	2007. 2. 23.
개정	2008. 12. 12.
개정	2013. 12. 31.
개정	2015. 9. 18.
개정	2020. 12. 15.
개정	2022. 11. 25.

제 1 조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학회지(소음진동)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편집부회장) 1인, 편집인(편집이사) 6인 및 다수의 부편집인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본 위원회 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인과 부편집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본 위원회 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회원중에서 공모 또는 회장의 추천.
2. 편집인 및 부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의 추천.

제 5 조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6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관련 중요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세칙은 2000년 9월 29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본 세칙의 개정된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본 세칙의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본 세칙의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